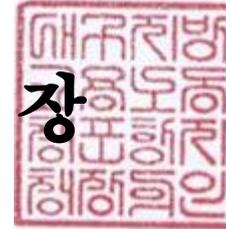
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수취인 불명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01.03.

###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하는 내용		
1	김0우	70.08.16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회수 처분사전통지서 (의견제출통지)	-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-같은법 시행령 제12조 -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, 제18조, 제19조	○ 기 지급된 1회차~6회 구직촉진수당 (부정수급) 회수 (3,000,000원) 및 추가징수액 (1,500,000원) 총 4,500,000원 반환 ○ 지급결정 취소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	수취인 불명 전화수신거부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길 2번길 49-1

4. 공고기간: 2024.01.03. ~ 2024.01.1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은진(Tel. 054-288-35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